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선주원남동 통 순서 조정에 따른 통장 정수 조정(안 별표)
 - 현행 : 선주원남동 1통~34통, 40통~53통 (통장 48명)
 - 개정 : 선주원남동 1통~48통 (통장 48명)
 - 2020. 7월 선주원남동 35~39통이 송정동으로 편입되어 공백 발생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수변동 없이 선주원남동 공백 통의 통장 순서를 앞당겨 조정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시민들의 혼란 여지를 없애고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됨.